

## 재해위험저수지 지정·고시

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(재해위험저수지·댐의 지정 및 관리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(재해위험저수지·댐의 지정)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을 고시합니다.

2021년 11월 3일



### 1. 재해위험저수지 지정내용

저수지명	위치	시설현황				지정내용
		수해면적 (ha)	총 저수량 (만 m <sup>3</sup> )	제당연장 (m)	제당고 (m)	
연곡저수지	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572-2	12.0	1.2	84.0	7.4	재해위험
연곡1저수지	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555-1	2.6	0.7	200	5.5	재해위험
장암저수지	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2번지	49.0	2.5	175.0	29.2	재해위험
용담저수지	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933-2	20.0	1.68	146.0	5.4	재해위험
사정저수지	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382	5.0	0.6	75.0	6.2	재해위험
소회산저수지	포천시 영북면 소회산리 84	5.0	0.5	88.0	6.9	재해위험

### 2.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사유

-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에 대한 보수·보강이 필요한 저수지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

### 3. 재해위험저수지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

#### ○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각호의 행위

-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
  -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·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
  -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
- ※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### 4.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일: 2021. 11. 3.

### 5. 기타문의: 포천시청 문화경제국 친환경농업과 기반조성팀(☎031-538-3742)